

## 부록 1

## 관련 법규

###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조문

<b>제1장 총칙</b>	<b>제13장 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b>
제1조 목적	제34조 기술관리인
제2조 정의	제35조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제3조 적용 범위	제36조 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제3조의2 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	제37조 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8조 보고서 제출
제5조 폐기물의 광역 관리	제39조 보고 · 검사 등
제6조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제39조의2 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제7조 국민의 책무	제39조의3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제8조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제40조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제9조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제41조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의 설립
제10조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	제42조 조합의 사업
제11조 폐기물 통계 조사	제43조 분담금
제12조 폐기물 공정시험 방법	제44조 「민법」의 준용
<b>제2장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b>	<b>제6장 보조</b>
제13조 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제45조 폐기물 인계 · 인수 내용 등의 전산 처리
제13조의2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	제46조 폐기물처리 신고
제13조의3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관한 유해성기준	제46조의2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제14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47조 폐기물의 회수 조치
제14조의2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제48조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제14조의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 등	제48조의2 의견제출
제15조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제49조 대집행
제15조의2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제50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
제16조 협약의 체결	제51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행보증금
제17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제52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 적립
제18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제53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용도 등
제19조 사업장폐기물처리자의 의무	제54조 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 이용 제한 등
제24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가격	제55조 폐기물 처리사업의 조정
제24조의2 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	제56조 국고 보조 등
제24조의3 수입폐기물의 처리	제57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b>제3장 [삭제]</b>	제58조 폐기물 처리설적의 보고
<b>제4장 폐기물처리업 등</b>	제58조의2 한국폐기물협회
제25조 폐기물처리업	제59조 허가 등의 수수료
제26조 결격 사유	제60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27조 허가의 취소 등	제61조 청문
제28조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제62조 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제29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제62조의2 별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0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b>제7장 별칙</b>
제31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제63조 별칙
제32조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 · 신고 등의 의제	제64조 별칙
제33조 권리 · 의무의 승계 등	제65조 별칙
	제66조 별칙
	제67조 양벌규정
	제68조 과태료

## 폐기물관리법 관련 법령 및 규칙

<p><b>관련법령</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li> <li>- 석면안전관리법</li> <li>-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li> <li>-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li> <li>-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li> <li>-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li> </ul>	<p><b>자치법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li> <li>-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li> <li>-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li> <li>-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li> </ul>
<p><b>행정규칙</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부)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li> <li>-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li> <li>- 생활폐기물중 폐가전제품 처리대행을 할 수 있는 자 지정</li> <li>-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 처리할 수 있는 지역 지정</li> <li>- 집단급식소의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산정기준</li> <li>-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대행자 변경지정 고시</li> <li>-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li> <li>-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기준</li> <li>- 폐수처리오너 및 공정오너 발생시설</li> <li>- 매립시설의 일일복토재를 인공복토재로 사용하는 경우의 복토두께에 관한 규정</li> <li>-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li> <li>- 소각시설 검사기관 지정</li> <li>- 에너지회수기준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li> <li>- 유기성오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li> <li>-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 처리할 수 있는 지역 지정</li> <li>- 의료폐기물전용용기 검사수수료 고시</li> <li>-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 등에 관한 고시</li> <li>- 정제연료유 등의 공급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li> <li>-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li> <li>- 축산농가 등 폐석면 배출 시설물 지정</li> <li>- 폐기물 분석전문 기관의 인정 등에 관한 규정</li> <li>- 폐기물 재활용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관한 규정</li> <li>-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li> <li>- 폐기물소각시설및매립시설의 세부검사방법에관한 규정</li> <li>-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li> <li>-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li> <li>-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환경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li> <li>-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li> <li>-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li> <li>-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기준</li> <li>- 폐목재의 재활용기준</li> <li>- 환경보전협회 교육수수료</li> <li>- 환경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인정 등에 관한 규정</li> </ul>	

##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 및 규칙

<p><b>제1장 총칙</b></p> <p>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제5조 발주자의 의무 제6조 배출자 등의 의무 제7조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의 의무</p> <p><b>제2장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시책 마련</b></p> <p>제8조 재활용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 연구개발 등의 지원 제10조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이용 제11조 재활용 통계조사</p> <p><b>제3장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b></p> <p>제12조 건설폐기물의 분류 등 제13조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제13조의2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제14조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 및 공시 등 제15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제16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 · 수탁 계약 등 제17조 배출자의 신고 등 제18조 건설폐기물의 인계 · 인수 등 제19조 건설폐기물 인계 · 인수 내용 등의</p> <p><b>제4장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b></p> <p>제21조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제22조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 등 제23조 건설폐기물 수집 · 운반 또는 처리의 재위탁 금지 제24조 결격사유 제25조 허가취소 등 제26조 과징금의 부과 · 징수 등 제27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신고 제28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완료 및 사용신고 제29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제30조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 · 신고 등 제31조 권리 · 의무의 승계 등 제32조 장부의 비치, 기록 및 보존 제33조 휴업, 폐업 등의 신고 제34조 보고, 검사 등</p>	<p><b>제5장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및 사용촉진</b></p> <p>제35조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등 제35조의2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자 준수사항 제36조 순환골재의 품질인증 등 제36조의2 품질인증의 결격사유 제37조 품질인증의 취소 등 제38조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 제39조 순환골재 등의 사용에 관한 권고</p> <p><b>제6장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등</b></p> <p>제41조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등 제42조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제43조 방치폐기물의 처리 제44조 삭제 &lt;2009.6.9&gt; 제45조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 제46조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주체에</p> <p><b>제7장 공제조합 등의 설립</b></p> <p>제47조 공제조합의 설립 제48조 공제조합의 사업 제49조 공제규정 제50조 「보험업법」의 적용배제 제51조 신용에 의한 보증 등 제52조 용역이행 상황 조사 등 제53조 보고서의 제출 등 제54조 다른 법률의 적용 제55조 협회의 설립 제56조 「민법」규정의 준용</p> <p><b>제8장 보칙</b></p> <p>제56조의2 교육 제57조 청문 제58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 위탁 제59조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재정지원 제60조 수수료 제61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p> <p><b>제9장 벌칙</b></p> <p>제62조 벌칙 제63조 벌칙 제64조 벌칙 제65조 양벌규정 제66조 과태료</p>
--	--

##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조문

<b>관련법령</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li> <li>-폐기물관리법</li> <li>-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li> <li>-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li> </ul>	<b>자치법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주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li> <li>-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li> <li>-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li> <li>-포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li> </ul>
<b>행정규칙</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li> <li>-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국토교통부)</li> <li>-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환경부)</li> <li>-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평가 업무처리지침</li> <li>-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li> <li>-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업무처리지침</li> <li>-순환골재 품질기준</li> <li>-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li> <li>-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li> <li>-공사구간 및 포장면적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li> <li>-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li> <li>-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li> <li>-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li> </ul>	

## 석면안전관리법

### 석면안전관리법 조문

<b>제1장 총칙</b>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b>제6장 석면해체 사업장의 주변환경 등 관리</b> 제27조 석면해체 · 제거작업의 공개 제28조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제29조 작업중지 등 제30조 석면해체 · 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제31조 발주자의 책임 등
<b>제2장 석면관리 기본계획 등</b> 제5조 석면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7조 실태조사	<b>제7장 보칙</b> 제32조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제33조 석면환경센터의 지정 · 운영 제34조 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취소 등 제35조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 · 운영 제36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37조 타인 토지의 출입 등 제38조 토지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제39조 대집행 제40조 보고 및 검사 제41조 청문 제42조 위임 및 위탁 제4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b>제3장 석면함유제품 등의 관리</b> 제8조 석면등의 사용금지 등 제9조 자가 측정 제10조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지정 제11조 석면함유가능물질의 관리	<b>제8장 벌칙</b> 제44조 벌칙 제45조 벌칙 제46조 벌칙 제47조 벌칙 제48조 양벌규정 제49조 과태료
<b>제4장 자연발생석면의 관리</b> 제12조 지질도 작성 제13조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제14조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 제15조 관리계획의 수립 · 시행 제16조 관리지역의 지원 제17조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제출 제18조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등 제19조 지정 해제 등 제20조 조례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관리	
<b>제5장 건축물 석면의 관리</b> 제21조 건축물석면조사 제22조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제23조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등 제24조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교육 제25조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 제26조 슬레이트 처리에 관한 특례	

## 석면안전관리법 관련 법령 및 규칙

<p><b>관련법령</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안전보건법</li> <li>- 석면피해구제법</li> <li>- 폐기물관리법</li> <li>-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li> <li>-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li> </ul>	<p><b>자치법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li> <li>-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li> </ul>
<p><b>행정규칙</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공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허용기준(고용노동부)</li> <li>-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고용노동부)</li> <li>-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국토교통부)</li> <li>- 가공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허용기준(환경부)</li> <li>-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환경부)</li> <li>-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li> <li>-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생산 승인 업무지침</li> <li>- 학교석면안전관리인 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li> <li>- 석면안전관리위원회 운영세칙</li> <li>- 석면조사기관 및 석면해체제거업자 종사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li> <li>-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방법</li> <li>- 자연발생석면 지질도 작성 방법</li> <li>- 폐슬레이트 매립시설의 석면 비산정도 조사방법</li> <li>- 폐슬레이트 포장재 기준 및 포장방법</li> <li>- 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li> <li>-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li> <li>- 석면건축물의 평가 및 조치 방법</li> <li>-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li> <li>- 석면안전관리인 교육비용</li> <li>-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li> <li>-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분석을 위한 시료 채취 및 분석방법</li> </ul>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조문

<b>제1장 총칙</b>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조의2 자원순환에 관한 기본원칙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6조 국민의 책무 제7조 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 등 <b>제2장 자원순환 촉진 등</b> 제1절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억제 등 제8조 자원의 절약 등 제8조의2 제품의 자원순환성 평가 등 제9조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제9조의2 포장재의 재질·구조 개선 등 제10조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제10조의2 1회용 봉투·쇼핑백 판매대금의 용도 제11조 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 고려 등 제12조 폐기물부담금 제12조의2 폐기물부담금의 정수유예·분할납부 등 제2절 폐기물의 분리·수거 및 재사용 촉진 등 제12조의3 폐기물배출자의 분리 보관 등 제13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제13조의2 재활용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13조의3 재활용가능자원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제14조 분리배출 표시 제15조 부품 등의 재사용 촉진 제15조의2 빙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제15조의3 빙용기보증금 잔액의 용도 제3절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등 <신설 2008.3.21> 제16조 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제17조 재활용의무율 제17조의2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제18조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제19조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 제20조 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의 용도 제23조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25조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25조의2 재활용의 권리 및 조치명령 제25조의3 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25조의4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제조 신고 등 제25조의5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제25조의6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제25조의7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신고 등 제25조의8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제25조의9 고형연료제품 수입자·제조자 및 사용자 준수사항 제25조의10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제조 금지명령 등 제25조의11 금지명령을 같은한 과징금 제25조의12 고형연료제품의 처리 등 제25조의13 권리·의무의 승계 등 제25조의14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 제25조의15 폐자원에너지센터 제26조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 <b>제3장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b> 제27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제28조 조합설립의 인가절차 등 제28조의2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의 설립 등 제28조의3 유통지원센터 설립의 인가절차 등 제28조의4 시정명령 등 제28조의5 인가의 취소 제29조 분담금 등 제30조 「민법」의 준용 <b>제4장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b> 제31조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 제32조 삭제 <2004.12.31> 제33조 재활용제품의 규격·품질기준 제34조 재활용단지의 조성 등 제34조의2 재활용단지의 조성 지원 제34조의3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제34조의4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설치 제34조의5 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등 제34조의6 자원순환에 관한 평가기준과 지표 등 제34조의7 자원순환 정보의 제공 등 제34조의8 자발적 협약의 체결 제34조의9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 <b>제5장 보칙</b> 제35조 자원재활용협회 제35조의2 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제35조의3 법제상·재정상의 조치 등 제36조 보고 및 검사 등 제37조 관계 기관의 협조 제38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38조의2 청문 <b>제6장 벌칙</b> 제39조 벌칙 제39조의2 벌칙 제40조 양벌규정 제41조 과태료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조문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지식경제부)
-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지식경제부)
-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환경부)
-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환경부)
- 2013년 전기전자제품별 재활용회수의무율
- 2014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설치운영지침
- 공공기관의 폐기물재활용촉진을 위한 지침
- 분담금 공제를 위한 회수재활용량 조사방식 및 산정방법
-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 에너지회수기준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 재활용 실적인정 및 실적조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고시
-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 포장재 재질구조 사전평가제도 운영지침
-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제도 운영지침
-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지식경제부)
-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환경부)
-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 업종에서 제외되는 도소매업종
-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
-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 2013년 전기전자제품별 재활용회수의무율 ]
- 2013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14년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
- 2014년도 재활용비용산정지수
- 2017년도 제품포장재별 장기재활용목표율
- 재활용사업자에 관한 고시
-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 고형연료제품 품질 시험분석방법
-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등에 관한 고시
- 금속캔 및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종류에 관한 규정
-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입력방법 등에 관한 고시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조문

<b>제1장 총칙</b>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토계획에의 반영 제4조 도시·군기본계획에의 반영 제5조 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제6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제7조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 제8조 폐기물수수료의 차등 적용 <b>제2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촉진</b> 제9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제10조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고시 등 제11조 도시지역 밖의 입지에 대한 용도지역 의제 제11조의2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11조의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 제12조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등 제13조 예상 피해에 관한 분쟁의 조정 등 제14조 토지 등의 수용·사용 제15조 시설 부지 주민에 대한 지원	<b>제3장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b> 제17조 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 제17조의2 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제18조 이주대책 제19조 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제20조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제21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제22조 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제23조 부대시설 등의 시설설치기준 제25조 지역주민의 감시 제25조의2 주민감시요원의 자격 제26조 환경상 영향의 조사·공개 <b>제4장 보조</b> 제27조 민자유치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제28조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설치 지원 제29조 연구·개발 등 제30조 권한·업무의 위임·위탁 <b>제5장 벌칙</b> 제31조 벌칙 제32조 양벌규정
---	---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 및 규칙

<b>관련법령</b> -산업안전보건법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b>행정규칙</b> -수도권 매립지 주민감시요원 수당지급기준 -수도권매립지 주민감시요원 수당지급기준 고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환경상영향조사의 조사항목 및 횟수에 관한 기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환경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b>자치법규</b> -서울특별시난지도매립지가스및침출수처리시설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6조 국민의 책무 제7조 국제협력의 증진 제2장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 제9조 유해물질의 사용제한대상·함유기준 등 제10조 재질·구조 개선지침 등 제11조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 제12조 재활용정보의 제공과 재질·구조 등의 개선제안 등 제13조 재활용촉진을 위한 권고의 이행 여부 등 보고 제14조 재질·구조개선에 따른 안전성과 내구성 등의 확보 노력 제3장 폐전기·폐전자제품과 폐자동차의 재활용 제1절 폐전기·폐전자제품 제15조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인계·재활용의무 제16조 재활용 목표관리 및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제16조의2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 방법 및 기준 제16조의3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기후·생태 계변화 유발물질 회수 등 제16조의4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 및 인계의무 등 제17조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제18조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제18조의2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징수 제18조의3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등의 처리 제19조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용도 제21조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제22조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등 제23조 분담금 등 제24조 「민법」의 준용 제2절 폐자동차 제25조 폐자동차 재활용비율의 준수 등 제26조 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 등 제27조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 등의 분리·보관 등 제28조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비용의 충당 제29조 사업자단체의 설립 제30조 사업자단체의 인가절차 등 제31조 폐자동차 재활용결과의 보고 등	제4장 재활용업의 등록 등 제32조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 제32조의2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 제33조 결격사유 제34조 등록취소 등 제35조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승계 등 제5장 보칙 제36조 장부의 기록·보존 제37조 보고와 검사 등 제38조 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제39조 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자의 관리표 작성·제출의무 제40조 관계기관의 협조 제41조 청문 제42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6장 벌칙 제43조 벌칙 제44조 양벌규정 제45조 과태료 제46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	---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 및 규칙

### 관련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 자동차관리법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 행정규칙

- 자동차의 재활용가능률평가방법(지식경제부)
-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지식경제부)
- 자동차의 재활용가능률평가방법(환경부)
-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환경부)
- 2013년 전기전자제품별 재활용회수의무율
- 2014년도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년도의 총 출고량 및 인구수
- 2014년도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년도의 총 출고량, 인구수 및 반영계수
- 2017년도 제품포장재별 장기재활용목표율
- 자동차의 재활용정보제공통신망
-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유해물질 함유기준의 준수여부 확인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전기전자제품의 인구 1인당 장기 재활용목표량 고시]
-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 고시(산자부 공동고시)
- 폐자동차의 재활용비율 준수여부 확인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
- 2013년 전기전자제품별 재활용회수의무율
- 2014년도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년도의 총 출고량 및 인구수
- 2014년도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및 회수비용산정지수
- 2014년도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년도의 총 출고량, 인구수 및 반영계수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조문

제1조 목적	제14조 녹색제품관련 정보의 요청
제2조 정의	제14조의2 녹색제품 정보관리체계 구축 · 운영
제2조의2 적용범위	제15조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지원 등
제3조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책무	제15조의2 녹색제품 진흥 관련 협회의 육성
제4조 녹색제품구매촉진기본계획	제15조의3 자발적 협약의 체결
제5조 삭제	제15조의4 녹색제품의 해외교역 확대
제6조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제16조 보조금의 우선 지원 등
제6조의2 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 등	제17조 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제7조 녹색제품의 구매지침	제17조의2 전문인력의 양성
제8조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제17조의3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 · 운영
제9조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제18조 녹색제품 판매 활성화
제10조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조요청	제18조의2 보고 · 검사 등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등	제18조의3 청문
제12조 조달청장의 역할	제19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 위탁
제13조 삭제	제20조 과태료
	제21조 삭제 <2012.2.1>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 및 규칙

<b>행정규칙</b>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
녹색매장의 지정기준
친환경상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b>자치법규</b>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노원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부록 2

**폐기물처리시설  
환경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8]

배출가스 설계기준		단위	배출허용기준(2015년 1월 적용)
입자상 물질	먼지	mg/Sm <sup>3</sup>	10(12)이하
	비산먼지	mg/Sm <sup>3</sup>	0.5이하
	크롬화합물(Cr)	mg/Sm <sup>3</sup>	0.3(12)이하
	구리화합물(Cu)	mg/Sm <sup>3</sup>	5이하
	아연화합물(Zn)	mg/Sm <sup>3</sup>	5이하
	니켈 및 그 화합물(Ni)	mg/Sm <sup>3</sup>	2이하
	납 화합물(Pb)	mg/Sm <sup>3</sup>	0.2(12)이하
	카드뮴 화합물(Cb)	mg/Sm <sup>3</sup>	0.02(12)이하
가스상 물질	매연	도	링걸만 비탁표 2도 이하
	암모니아	ppm	30(12)이하
	일산화탄소	ppm	50(12)이하
	염화수소	ppm	15(12)이하
	황산화물	ppm	15(12)이하
	질소산화물	ppm	70(12)이하
	이황화탄소	ppm	30이하
	포름알데이드	ppm	10이하
	황화수소	ppm	2(12)이하
	불소화합물	ppm	2(12)이하
	시안화수소	ppm	5이하
	브롬화합물	ppm	3이하
	벤젠	ppm	10이하
	페놀화합물	ppm	5이하
	수은화합물	ppm	0.08(12)이하
	비소화합물	ppm	0.25(12)
	염화비닐	ppm	10이하
	탄화수소(THC로서)	ppm	60(13)이하
	디클로로메탄	ppm	50이하

비고 1. 배출허용기준 난의 ( )는 표준산소농도(O<sub>2</sub>의 백분율)를 말한다.

## 악취 배출허용기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3]**

### 1. 복합악취

구분	배출허용기준 (화석배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 (화석배수)	
	공업지역	기타 지역	공업지역	기타 지역
배출구	1000 이하	500 이하	500 ~ 1000	300 ~ 500
부지경계선	20 이하	15 이하	15 ~ 20	10 ~ 15

### 2. 지정악취물질

구분	배출허용기준 (ppm)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의 범위(ppm)	적용시기
	공업지역	기타 지역		
암모니아	2 이하	1 이하	1 ~ 2	
메틸메르캅탄	0.004 이하	0.002 이하	0.002 ~ 0.004	
황화수소	0.06 이하	0.02 이하	0.02 ~ 0.06	
다이메틸설파이드	0.05 이하	0.01 이하	0.01 ~ 0.05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0.03 이하	0.009 이하	0.009 ~ 0.03	
트라이메틸아민	0.02 이하	0.005 이하	0.005 ~ 0.02	
아세트알데하이드	0.1 이하	0.05 이하	0.05 ~ 0.1	
스타이렌	0.8 이하	0.4 이하	0.4 ~ 0.8	
프로파온알데하이드	0.1 이하	0.05 이하	0.05 ~ 0.1	
뷰틸알데하이드	0.1 이하	0.029 이하	0.029 ~ 0.1	
n-발레르알데하이드	0.02 이하	0.009 이하	0.009 ~ 0.02	
i-발레르알데하이드	0.006 이하	0.003 이하	0.003 ~ 0.006	
톨루엔	30 이하	10 이하	10 ~ 30	
자일렌	2 이하	1 이하	1 ~ 2	
메틸에틸케톤	35 이하	13 이하	13 ~ 35	
메틸아이소뷰틸케톤	3 이하	1 이하	1 ~ 3	
뷰틸아세테이트	4 이하	1 이하	1 ~ 4	
프로파온산	0.07 이하	0.03 이하	0.03 ~ 0.07	
n-뷰틸산	0.002 이하	0.001 이하	0.001 ~ 0.002	
n-발레르산	0.002 이하	0.0009 이하	0.0009 ~ 0.002	
i-발레르산	0.004 이하	0.001 이하	0.001 ~ 0.004	
i-뷰틸알코올	4.0 이하	0.9 이하	0.9 ~ 4.0	

2005년  
2월 10일부터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월 1일부터

## 비고

1. 배출허용기준의 측정은 복합악취를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자의 악취물질 배출 여부를 확인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악취물질을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한 결과 기준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2. 복합악취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공기회석 관능법(空氣稀釋官能法)을 적용하여 측정하고, 지정악취물질은 기기분석법(機器分析法)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3. 복합악취의 시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채취한다.
  - 가. 사업장 안에 지면으로부터 높이 5m 이상의 일정한 악취배출구와 다른 악취발생원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부지경계선 및 배출구에서 각각 채취한다.
  - 나. 사업장 안에 지면으로부터 높이 5m 이상의 일정한 악취배출구 외에 다른 악취발생원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배출구에서 채취한다.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한다.
4. 지정악취물질의 시료는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한다.
5. “회석배수”란 채취한 시료를 냄새가 없는 공기로 단계적으로 희석시켜 냄새를 느낄 수 없을 때까지 최대로 희석한 배수를 말한다.
6. “배출구”란 악취를 송풍기 등 기계장치 등을 통하여 강제로 배출하는 통로(자연 환기가 되는 창문·통기관 등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7. “공업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가목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나목에 따른 일반공업지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만 해당한다)

## 소음·진동 규제기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8]

#### 1.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 dB(A))

대상 지역	소음원	시간대별	야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 ~18:00)	야간 (22:00 ~05:00)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 ~18:00)	야간 (22:00 ~05:00)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 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확성기	옥외 설치	60이하	65 이하	60 이하
		온내에서 옥외로 소 음이 나오는 경우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사업장	공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동일 건물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기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사장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나. 그 밖의 지역	확성기	옥외 설치	65 이하	70 이하	60 이하
		온내에서 옥외로 소 음이 나오는 경우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사업장	공장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동일 건물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기타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사장	65 이하	70 이하	50 이하	

#### 비고

- 소음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규제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3시간 이 하일 때는 +10dB을,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광란의 경우 사업장 규제기준)에 +10dB을 보정한다.
-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발파작업 및 브레이커·향타기·향발기·천공기·굴삭기(브레이커 작업에 한한다)를 사용하는 공사작업이 있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주간에만 규제기준치(발파소음의 경우 비고 제6호에 따라 보정된 규제기준치)에 +3dB을 보정한다.

7. 공사장의 규제기준 중 다음 지역은 공휴일에만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 주거지역
  -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8. “동일 건물”이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일체로 되어 있는 건물을 말하며, 동일 건물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업,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중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콜라텍업

## 2. 생활진동 규제기준

(단위 : dB(V))

대상 지역	시간대별	주간 (06:00~22:00)	심야 (22:00~06:00)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65 이하	60 이하
나. 그 밖의 지역		70 이하	65 이하

### 비고

- 진동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규제기준치는 생활진동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 공사장의 진동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 발파진동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에 +10dB을 보정한다.

##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18]

#### 1. 지역구분 적용에 대한 공통기준

가. 제2호 각 목 및 비]고의 지역구분란의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및 특례지역은 다음과 같다.

- 1) 청정지역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이)하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이라 한다) 매우 좋음(I a) 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 2) 가지역 :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좋음(I b), 약간 좋음(II) 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 3) 나지역 :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보통(III), 약간 나쁨(IV), 나쁨(V) 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 4) 특례지역 : 환경부장관이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공동처리구역으로 지정하는 지역 및 시장·군수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정하는 농공단지
- 나.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의 공원구역 및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은 제2호에 따른 항목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청정지역으로 본다.
- 다. 정상가동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처리하고 있는 폐수배출시설에 제2호에 따른 항목별 배출허용기준(같은 호 나목의 항목은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수질오염물질 항목만 해당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나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 2. 항목별 배출허용기준

### 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화학적 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

지역구분	항목	대상규모			1일 폐수배출량 2천 세제곱미터 이상			1일 폐수배출량 2 천세제곱미터 미만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mg/L)	화학적 산소요구량 (mg/L)	부유 물질량 (mg/L)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mg/L)	화학적 산소요구량 (mg/L)	부유 물질량 (mg/L)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mg/L)	화학적 산소요구량 (mg/L)	부유 물질량 (mg/L)
청정지역	30 이하	40 이하	30 이하	40 이하	50 이하	40 이하	30 이하	50 이하	40 이하	30 이하
가지역	60 이하	70 이하	60 이하	80 이하	90 이하	80 이하	60 이하	90 이하	80 이하	60 이하
나지역	80 이하	90 이하	80 이하	120 이하	130 이하	120 이하	80 이하	130 이하	120 이하	80 이하
특례지역	30 이하	40 이하	30 이하	30 이하	40 이하	30 이하	30 이하	40 이하	30 이하	30 이하

비고

- 하수처리구역에서 「하수도법」 제2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서의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0 제1호차목 및 별표 27 제2호타목(별표 20 제1호차목에 따른 공장만 해당한다)에 따른 공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특례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 나. 폐놀류 등 수질오염물질(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항목	지역 구분	청정 지역	가 지역	나 지역	특례 지역
수온이온농도		5.8~8.6	5.8~8.6	5.8~8.6	5.8~8.6
노른핵산 추출물질 함유량	광유류(mg/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동식물유지류(mg/L)	5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폐놀류함유량(mg/L)		1 이하	3 이하	3 이하	5 이하
시안함유량(mg/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크롬함유량(mg/L)		0.5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용해성철함유량(mg/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아연함유량(mg/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구리(동)함유량(mg/L)		1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항목	지역 구분	청정 지역	가 지역	나 지역	특례 지역
카드뮴함유량(mg/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수은함유량(mg/L)	0.001 이하	0.005 이하	0.005 이하	0.005 이하	0.005 이하
유기인함유량(mg/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비소함유량(mg/L)	0.0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납함유량(mg/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6가크롬함유량(mg/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용해성망간함유량(mg/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플로오르(불소)함유량(mg/L)	3 이하	15 이하	15 이하	15 이하	15 이하
PCB함유량(mg/L)	불검출	0.003 이하	0.003 이하	0.003 이하	0.003 이하
총대장균군(群) (총대장균군수)(mℓ)	1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색도(도)	200 이하	300 이하	400 이하	400 이하	400 이하
온도(℃)	40 이하				
총질소(mg/L)	30 이하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총인(mg/L)	4 이하	8 이하	8 이하	8 이하	8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mg/L)	0.06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mg/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음이온계면활성제(mg/L)	3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벤젠(mg/L)	0.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디클로로메탄(mg/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생태독성(TU)	1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셀레늄함유량(mg/L)	0.1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사염화탄소(mg/L)	0.004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0.08 이하	0.08 이하
1,1-디클로로에틸렌(mg/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6 이하	0.6 이하
1,2-디클로로에탄(mg/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항목	지역 구분	청정 지역	가 지역	나 지역	특례 지역
클로로포름(mg/L)	0.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니켈(mg/L)	0.1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바륨(mg/L)	1.0 이하	10.0이하	10.0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1,4-다이옥сан(mg/L)	0.05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mg/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8 이하
염화비닐(mg/L)	0.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1.0 이하	
아크릴로니트릴(mg/L)	0.01 이하	0.2 이하	0.2 이하	1.0 이하	
브로모포름(mg/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나프탈렌(mg/L)	0.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폼알데하이드(mg/L)	0.5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에파클로로하이드린(mg/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톨루엔(mg/L)	0.7 이하	7.0 이하	7.0 이하	7.0 이하	
자일렌(mg/L)	0.5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 비고

- 색도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4 제2호18)의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같은 호 19)의 기타 섬유제품 제조시설 및 같은 호 23)의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색소첨가 제품만 해당한다) 제조사설에만 적용한다.
-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며, 별표 4 제2호의 3), 12), 14), 17)부터 20)까지, 23), 26), 27), 30), 31), 33)부터 40)까지, 46), 48)부터 50)까지, 54), 55), 57)부터 60)까지, 63), 67), 74), 75) 및 80)에 해당되는 폐수배출시설에만 적용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모두 폐수증발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폐수배출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의 경우 그 원인이 오직 염(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성분 때문으로 증명된 때에는 그 폐수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방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연안해역에 방류하는 경우
    - 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연안해역을 제외한 곳으로 방류하는 경우(2010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하거나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폐수배출시설로 한정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술지원을 받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3호에 따른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오직 염 성분 때문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구비서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특례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폐수증발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직접 방류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 구분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1]

#### 1.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화학적 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의 배출허용기준

구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mg/L)	화학적 산소요구량(mg/L)			부유물질량 (mg/L)	
		과망간산칼륨법에 따른 경우		중크롬산칼륨법 에 따른 경우		
		1일 침출수 배출량 2,000m <sup>3</sup> 이상	1일 침출수 배출량 2,000m <sup>3</sup> 미만			
청정지역	30	50	50	400(90%)	30	
가지역	50	80	100	600(85%)	50	
나지역	70	100	150	800(80%)	70	

비고

- 화학적 산소요구량의 배출허용기준은 2001년 6월 30일까지는 과망간산칼륨법에 따른 경우와 중크롬산칼륨법에 따른 경우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2001년 7월 1일부터는 중크롬산칼륨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 중크롬산칼륨법에 따른 경우 ( ) 안의 수치는 처리효율을 표시한 것이며, 침출수 원수(原水)의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4,000mg/L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 안에 표기된 처리효율 이상이 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 청정지역·가지역·나지역의 구분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3 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구분에 따른다.

#### 2. 폐놀류 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항목	지역		청정지역	가 지역	나 지역
	수소이온농도	광유류(mg/L)	5.8~8.0	5.8~8.0	5.8~8.0
노말헥산추출 물질함유량	동식물유지류(mg/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페놀류함유량(mg/L)	5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시안함유량(mg/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크롬함유량(mg/L)	0.5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용해성철함유량(mg/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아연함유량(mg/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구리함유량(mg/L)	0.5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카드뮴함유량(mg/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수은함유량(mg/L)	불검출	0.005 이하	0.005 이하	0.005 이하	0.005 이하

항목	지역	청정지역	가 지역	나 지역
유기인함유량(mg/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비소함유량(mg/L)	0.1	0.5	0.5	0.5
납 함유량(mg/L)	0.2	1	1	1
6가크롬함유량(mg/L)	0.1	0.5	0.5	0.5
용해성망간함유량(mg/L)	2	10	10	10
불소함유량(mg/L)	3	15	15	15
PCB함유량(mg/L)	불검출	0.005	0.005	0.005
총대상균군수(군수/mL)	100	3,000	3,000	3,000
색도(도)	200	300	300	300
암모니아성질소(mg/L)	50 이하(95%)	100 이하(90%)	100 이하(90%)	100 이하(90%)
무기성질소(mg/L)	150 이하(85%)	200 이하(80%)	300 이하(70%)	300 이하(70%)
총인(mg/L)	4	8	8	8
트리클로로에틸렌(mg/L)	0.06	0.3	0.3	0.3
테트라클로로에틸렌(mg/L)	0.02	0.1	0.1	0.1

## 비고

1. 청정지역·가지역·나지역의 구분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9 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구분에 따른다.
2. 무기성질소는 암모니아성질소·아질산성질소·질산성질소의 합으로 한다.
3. 질소처리시설의 반응조 출구의 수온이 섭씨 12도 미만인 경우에는 암모니아성질소와 무기성질소의 기준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4. 암모니아성질소와 무기성질소의 ( )의 수치는 처리원수에 대한 처리효율을 표시한 것이며, 침출원수의 암모니아성질소 및 무기성질소의 농도가 1리터당 1,000밀리그램 이상인 경우에는 ( ) 안에 표기된 처리효율 이상이 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 4. 소각시설

##### 가. 배기가스로 배출되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 1) 소각시설(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및 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이상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제외한다)

(단위: ng-TEQ/Sm <sup>3</sup> )		
구분	신설시설	기존시설
시간당 처리능력이 4톤 이상인 경우	0.1	1
시간당 처리능력이 4톤 미만 2톤 이상인 경우	1	5
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미만 25킬로그램 이상인 경우	5	10

##### 비고

- “신설시설”이란 2001년 1월 1일(시간당 처리능력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은 2004년 7월 20일) 이후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거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9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시설 또는 「폐기물관리법」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시설을 말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하여는 소각시설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소각시설의 표준산소농도는 12파센트를 적용하며, 배출허용기준은 국제독성등가 환산계수(I-TEF)로 환산한 농도를 말한다.

2) 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이상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 0.1ng-TEQ/Sm<sup>3</sup>

3)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시간당 처리능력	시설별 적용기간	신설 시설	2001. 1. 1. 이후 2004. 7. 20. 전에 설치된 시설	2001. 1. 1. 전에 설치된 시설
4톤 이상	0.1	0.1	1	
2톤 이상 4톤 미만	1	1	5	
1톤 이상 2톤 미만	1	1	5	
200kg 이상 1톤 미만	5	5	5	
25kg 이상 200kg 미만	5	10	10	

**비고**

1. “신설시설”이란 2004년 7월 20일 이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거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시설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시설을 말한다.
2. “2001. 1. 1. 이후 2004. 7. 20. 전에 설치된 시설”이란 2001년 1월 1일 이후 2004년 7월 20일 전에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거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시설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시설을 말한다.

**나. 폐수로 배출되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 10pg-TEQ/L**